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청문회 증인 사후조치 이행 경과 보고〉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675호)

2025. 11.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학영 · 이해민 · 조정식 · 이정문 · 이주희 · 진성준
김남희 · 모경중 · 김주영 · 노종면 · 이재관 · 이용우
이재정 · 박지혜 · 정을호 · 서미화 · 강선우 · 정태호
한정애 · 김용만 · 장종태 · 박해철 · 임미애 · 이훈기
허 영 · 한민수 · 채현일 · 박상혁 · 백승아 · 송재봉
박 정 · 오세희 · 한병도 · 이건태 · 이병진 · 백혜련
안호영 · 이인영 · 문진석 · 김병기 · 김태선 · 김태년
의원(42인)

2. 제 안 일 : 2025. 10. 22.

3. 회 부 일 : 2025. 10. 23.

※ 의안번호 : 1367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은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 및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기업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임. 청문회는 단순히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달리, “중요한 사안에 대해 심사·의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판단의 기초가 될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핵심적인 국정감사 절차이므로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조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부처 등에 이행 경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위원회는 의결로 ① 증인이 발언을 통하여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②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증인의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및 제7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청문회) ① ~ ⑤ (생략)	제65조(청문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u><신설></u>	<u>⑦ 위원회는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제6항에 따른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u>
<u>⑥ ~ ⑧ (생략)</u>	<u>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u>

청문회란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개최하는 것을 말함.¹⁾

청문회는 국회가 그 제반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²⁾

그런데,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진술 과정에서 사후조치 등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증인이 발언을 통하여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계 정부·행정기관 등에 증인의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에서의 증인이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을 말함.⁴⁾

1)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2) 정호영, 「국회법론」(제3판), 법문사(2012), p.619

3) 쿠팡 청문회가 2025년 초에 있었고 2024년 국감에서도 쿠팡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음. 쿠팡이 다양한 약속을 했지만, 2025년 국감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니 90% 정도가 미이행되거나 이행을 거부하고 있었음(KBS, “민주, 국회 청문제도 강화 예고…“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2025. 10. 28.).

4)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의회대사전」, 1992, p.1213 ; 국회사무처, 「쉽게 풀어쓴 의회용어」,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선서하고,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위증 등의 죄로 처벌될 수 있음.⁵⁾

즉, 증인은 개념상 청문회에서 의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증언·진술할 의무를 지고, 법적으로는 허위의 증언·진술에 대하여 위증 등의 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래의 사후조치를 약속하는 발언을 과거에 자기가 경험한 사실에 대한 증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증인의 사후조치 약속에 구속력과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이행 경과의 보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증인의 개념상 의무와 법적 책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통해 이행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법문은

2018, p.458

5) 「국회법」 제65조(청문회) ⑥ 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 증인이 발언을 통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 해당 증인에게 사후조치의 이행 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결로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개정안의 법문에 따르면, 증인이 사후조치를 약속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약속한 사후조치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 경과를 위원회가 보고받을 수 있게 되므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이 개정안의 법문에 규정된 수단을 통해서만 온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증인의 사후조치 약속에 구애됨이 없이 청문회 종료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임.⁶⁾

참고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경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고 있는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회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결과 시정요구 등을 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6) 청문회를 종료한 경우 청문회의 결과 보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청문회가 일반적으로 위원회 안전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과 보고는 관련 안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321).

따라서, 위원회 안전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개최되는 청문회의 경우에는 관련 안전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문제(예: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 대우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청문회의 경우에는 안전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별개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⁷⁾

문 의 처

02)6788-5017

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④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